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이유

- 지역개발기금 용자대상 및 용자조건등의 미비점 보완 및 발전적으로 개선

주요골자

- 용자대상사업 확대 및 우선순위의 설정
 - 도로사업등 공기업대상사업이 아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용자 확대
 - 용자우선순위 사업에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등) 추가
- 용자조건외 개선

용 자 이 율 조 정	용 자 기 간 조 정
상·하수도사업 : 년 6.5%~7%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기 타 사 업 : 년 8%	공영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기 타 사 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일반회계 여유자금의 기금전입에 의한 회전기금 운영
 - 의무출연외 도비를 기금에 전입, 별도로 공기업대상이 아닌 사업등에 별도조건으로 구분용자 운영
- 자치단체 매출공채의 지역개발공채로의 일원화 및 전액출자 법인 공채소화기관으로 추가
- 기금 용자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내무부장관 승인규정이 중복 승인(지방채승인)규정으로 삭제
- 도직제 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중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첨 부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3조제2항중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를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군과”를 “도·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로 하고, 종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중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9조중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를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용자하되”로 한다.

제10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 상·하수도사업 : 년리 7%,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2. 여타사업 : 년리 8%

② 용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2. 공영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3. 기타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제10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목적사업에 용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용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용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